#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7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정점식·박형수·김미애

정희용 • 박덕흠 • 구자근

고동진 · 강선영 · 김태호

장동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, 낚시 어선의 출·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·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,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.

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섬 지역 주민들은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, 교통수

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4 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고립지역 주민 등이 필요한 경우의 낚시어선 이용) ①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섬 지역에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 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게 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이용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34조의2(고립지역 주민 등이
	필요한 경우의 낚시어선 이용)
	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섬
	지역에 여객선이 정기적으로
	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
	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
	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
	운송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
	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
	이용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
	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